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56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혜련, 이병도,
오현정, 김동식, 김용연,
봉양순, 서운기, 이정인,
김화숙, 김소양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‘장애등급’을 ‘장애 정도’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(안 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의 본문 중 “장애등급” 을 “장애 정도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6조(전수조사) 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연령, <u>장애등급</u>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6조(전수조사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장애 정도----- -----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